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4.

발의자 : 최수진 · 한지아 · 신성범  
유용원 · 박정하 · 구자근  
김소희 · 김예지 · 성일종  
이상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,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감면해주고 있으나,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초저출산 · 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.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,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, 법인세 감면  
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(안 제85조의6  
제1항 및 제2항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